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전면개정

김춘석 / 전략사업실 산업진흥부장

협회는 소비자보호원(99.12월) 및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2000.1월)에서 제기한 PC통신·인터넷 기본약관의 이용자 불공정 조항 등에 대해 21개 사업자와 협의, 98년 6월 마련한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을 전면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OOO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고객 간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약관의 적용) ① OOO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별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이용자번호 이상으로 합니다.

③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

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이용신청서나 서비
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
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화 또는
서면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PC통신 ·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 ①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이외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회선
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용고객이 별도의 회선을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자번호의 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0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④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한 · 정지등

제 11 조 (이용제한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등을 지정된 기일로부터 ○개월이상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관련법령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제 13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① 이용고객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제 15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등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해지)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 이용고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요금등

제 17 조 (요금등의 종류)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등의 종류는 별표1과 같습니다.

제 18 조 (요금등의 계산구분) ① 요금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납, 일액, 월액, 분기액, 반기액, 연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간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 1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 ④ 연액요금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요금등을 계산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할로 계산합니다.

제 19 조 (요금등의 납입기일 및 납인청구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요금납입자는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회사는 상세한 납입청구내역을 서비스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ISP 제외)
-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발송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요금등의 선납) 이용고객은 요금등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의 종류 및 금액과 할인율, 정산방법 등은 이용계약서에 따릅니다.

제 21 조 (불법면탈 요금등의 청구) ① 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 22 조 (가산금의 부과등) ① 요금등(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2개월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고객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요금등의 감면 및 할인) ① 회사는 별표 2와 같이 요금등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용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한 및 일시정지 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요금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후 10일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5 조 (요금등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요금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6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③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면책)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5조의 개정조항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